

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3.11.(목) 총 3매	
담당부서 해양수산환경과	담당자	• 과장 김진환, 주무관 김윤희 - ☎ (033) 520-6246	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·홍보

- 경영정보 등록 후 3년 내에 변경등록 등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성동)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의 기초가 되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변경된 사항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안내·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·어촌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경영 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인이 어업생산 수단·방법·규모, 어선·양식시설 등 어업경영정보를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며,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은 자금 융자, 보조금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2021년 2월말 현재 강원도에는 총 2,587건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.

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, 일부 어업인의 경우 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어업경영정보 현행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거 법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 되었고(2020. 8. 2.),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업인이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시 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서도 주기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.

법령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,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없던 것을 3년이라는 기간이 신설되었고,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 말소된다.

두 번째,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. 기존에는 등록정보의 갱신·수정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했으나, 법률 개정을 통해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(주민등록정보, 어업권 등)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불일치 하거나, 주소·연락처 등 경미한 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정정 후 어업경영체에게 통보하면 된다.

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다. 기존에는 지자체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여부만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정보 현행화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, 이는 어업정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어업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업무를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붙임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등록 제출서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김윤희 주무관(☎ 033-520-62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어업경영체 등록 대상**

등록대상		등록제외 대상
어업인 (주민등록 상 1가구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•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·유어낚시업·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•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• 무면허·무허가·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
어업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어조합법인 • 어업회사법인 	

* (근거)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6호 및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2항

□ **어업경영체 등록 제출서류**

공통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업면허·허가·신고 사본 ○ 어업인 증빙 서류(판매 또는 종사 실적) 	
실 적 별	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	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협 위판 실적 확인서 • 계산서 • 납품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• 어장관리실태 조사서 • 어촌계 조업일지

□ **제출처 : 동해지방해양수산청(해양수산환경과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)**

* (문의) 양양·속초·고성 거주 어업인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 (033-520-6374~76), 그 외 강원도 시군 거주 어업인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(033-520-6235~38, 6248)